



홍삼,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

- 규제심판부,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

- 규제심판부는 1.16(화) 회의를 개최하여,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.
 - 다만,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.
- ※ 위원(5명) : 이창범(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, 의장), 김명철(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), 이혁(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, 이혁우(규제개혁위원회 위원), 임상호(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)

<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>

-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, 홍삼, 비타민,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.
 -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'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,
 -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, 선물 비중도 약 26%에 이른다.
- 반면,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*하고 있으며,
 - * 「건강기능식품법」 제3조, 제6조 등
 -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“영업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.

-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,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,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.

※ (개인간 거래 플랫폼 A) 월평균 △자동 차단 약 11,000건 △신고 차단 약 29,000건

사례1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. 하지만 기호에 맞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. 새 제품이라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,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.

사례2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.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, 불법이라는 애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.

-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* 등을 고려했을 때,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.

* (대법원 판례) “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·반복적으로 하는 것”

- 또한,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.

* 「건강기능식품법」 제44조

- 아울러,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~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,

-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%를 차지*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.

* (유통채널별 구매금액 비중, '23년) △인터넷몰 67.9% △대형할인점 5.7% △방문판매 3.6% 등

- 한편, 미국, EU,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.

< 해외 사례 >

국가	미국	일본	EU	한국
제조업 인허가	등록제	허가제	신고제 (국가별로 상이)	허가제
판매업 인허가	불필요	불필요	불필요	신고제
개인간 재판매	가능	가능	가능	불가능

<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>

-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,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,
 -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.
-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
 - (허용 기준) 유사·해외 사례,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,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
 - (관리 방안)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·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 - (시범 사업)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,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
- 아울러, 건강기능식품의 허위·과대광고,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·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

<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>

-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.
 - 특히,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,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.
-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<총괄>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성규 (044-200-2563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수 (044-200-2560)
<공동>	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영희 (043-719-2451)
		담당자	사무관	임락중 (043-719-2452)

참고1 건강기능식품 관련 현황

1 개념 및 특징

- (개념)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**영양소** 또는 인체에 유용한 **기능성***을 가진 **원료나 성분**을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

* ① 기능성: △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 △생리활성 기능 △영양소 기능
 ② 원료·성분: △고시형 97개(철분 등 영양성분 28개, 홍삼 등 기능성 원료 69개)
 △개별인정형 330개(크릴오일, 강황추출물 등)

- (일반 식품과의 차이) 식약처로부터 **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·성분**을 일정량 함유하고 있어, 일반 식품과 달리 **기능성 표시***가 가능

* (예시) △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△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

- (의약품과의 차이)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, 건강기능식품에는 **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시***가 의무

* (예시) “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”

2 관련 통계

□ 시장 규모

(출처: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)

	2019	2020	2021	2022	2023 ^e
시장규모(원)	2조 9,508억	3조 3,254억	4조 321억	6조 1,498억	6조 2,022억

□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

(출처: 통계청)

	2018	2019	2020	2021	2022
제조업	500	508	521	539	566
판매업	87,349	81,559	91,489	103,420	126,327
일반	84,058	78,312	87,688	98,951	121,223
유통전문	3,291	3,247	3,801	4,469	5,104

□ 주요 유통채널별 판매금액 비중

(출처: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)

	2019	2020	2021	2022	2023 ^e
인터넷몰	43.8	56.9	63.6	64.5	67.9
대형할인점	8.8	7.8	6.9	6.0	5.7
방문판매	7.4	5.8	4.4	4.5	3.6

홍삼,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길 열려

규제심판부, 국민 불편 해소 위해 **올해 1분기 내** 대량 영업이 아닌
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(온라인 등) 허용방안 마련토록 권고

